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701

발의연월일: 2021. 12. 6.

발 의 자:김정호·이병훈·김회재

어기구・양향자・윤후덕

정춘숙 · 서동용 · 고용진

민홍철 · 김병욱 · 이탄희

허종식 • 전혜숙 • 김성환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설계·감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공사(이하 "공사"라 함)의 범위에 대하여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따른 공사를 제외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건축설비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·감리 업무는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가 할 수 있음.

이러한 현행법 체계에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·감리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어 공동주택 정보통신 감리 과정에 서 홈네트워크 고시 준수 여부를 미확인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, 정보통신설비의 전문화·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현행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이에 설계·감리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「건축사

법」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서 다루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공사가 포함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1370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 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 및 제9호 중 "공사(「건축사법」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)에"를 각각 "공사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 중 "공사(「건축사법」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)의"를 "공사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,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"설계"란 <u>공사(「건축사법」</u>	8
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	
등은 제외한다)에 관한 계획	
서, 설계도면, 설계설명서, 공	
사비명세서, 기술계산서 및	
이와 관련된 서류(이하"설계	
도서"라 한다)를 작성하는 행	
위를 말한다.	
9. "감리"란 <u>공사(「건축사법」</u>	9
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	
<u>등은 제외한다)에</u> 대하여 발	
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	
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	
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	
하고, 품질관리ㆍ시공관리 및	
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	
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	
는 것을 말한다.	
10. "감리원(監理員)"이란 <u>공사</u>	10
(「건축사법」 제4조에 따른	사의

<u>건</u>	축물의	의 7	신축등	-은 저	의학	한디	<u>})</u>
<u>의</u>	감리	에	관한	기술	또는	=	7]
능.	을 기	신	사람	으로시	1 7	18	조
에	따근	} ī	바학기	술정기	보통	신-	부
장:	관의	인	정을	받은	사	람-	슬
말	한다.						

11.	\sim	16.	(생	략)
		<u> </u>	\ ()	

•	

11. ~ 16. (현행과 같음)